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1. 13.)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현행법은 초지조성 허가를 받고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중정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초지 조성에 따른 실익이 적고,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신규 초지 조성 허가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허가 취소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임.¹⁾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할 경우 향후 허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처분기준 합리화를 통해 경영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초지가 가장 많은 제주, 강원(총 64%) 확인 결과 초지 조성 신청이 저조한 편으로, 초지 조성 허가 취소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임(‘24.11.29)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초지조성 허가 취소 시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중지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허가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조성의 허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 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제12조(허가의 취소) ----- ----- ----- ----- --.
1. <u>허가일부</u> 1년이 지나도 사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 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1. <u>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u> <u>터</u>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